##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38

발의연월일: 2024. 7. 19.

발 의 자:서미화·정혜경·최수진

이병진 • 전종덕 • 김예지

이수진 · 오세희 · 황정아

김기표 • 이기헌 • 송재봉

권향엽・김 윤・채현일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은 장애의 종류와 개인별 특성에 따라 개별성을 띠기 때문에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피해회복지원 과정에서 학대피해 장애인 및 학대사실에 관련된 정보를 관계기관 등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학대피해 장애인의 피해회복지원을 위한 관계기 관 간의 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피해회복지원을 위해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의 다양한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0 및 제59조의21 신설).

나아가 최근 장애인학대 적발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

방과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내용에 포함하는 한편,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 하여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려는 것 임(안 제59조의22 신설 등).

또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4호에 정의된 "사회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시설의 장과 종사자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하여 장애인 사회서비스 확장에 따른 신고의무자 범주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23호 신설).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제59조의4제2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3. 그 밖에 장애인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제59조의20 및 제59조의2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9조의20(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피해회복지원과 자립지원을 위해 해당 지역 소재 장애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의 협력을 위한 협의회(이하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 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

다.

- 1. 피해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별피해회복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장애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 피해장애인 관련 자료 공유 및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의 의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람으로 한다.
- 1. 피해장애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의 장애인 업무 담당 공무원.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업무 담당 공무원이 위원이 된다.
- 2.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
-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중 피해장애인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 ④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장애 인학대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21(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 위원의 제척) ① 피해장애인통

합지원협의회의 위원은 자신이 속한 장애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장애인학대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에 대한 제59조의20제2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척된 위원(이하 "제척위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척위원이 속한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의 위원 중 제척위원이 속한 장애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접지역의 장애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대신하여 제59조의20제2항의 심의·의결에 참석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대신할 위원이없는 경우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에 속한 위원 중 제척위원이 속한 장애인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이 대신하여참석한다.

제59조의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2(장애인학대예방의 날) ① 범국민적으로 장애인학대의 예방 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장애인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장애인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예방의 날과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②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6.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u>6.</u> (생 략)	<u>7.</u>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	
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	
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23. 그 밖에 장애인에게 「사회
	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

③ ~ ⑧ (생 략) <신 설> 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의 장과 그 종사자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0(피해장애인통합지원 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피해회복지원과 자립지원을 위해 해당 지역 소 재 장애인 관련 기관 또는 단 체 간의 협력을 위한 협의회 (이하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 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 여야 한다.

- ②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피해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별피해회복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장애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간 피해장애인 관련 자료 공

- 유 및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 의 의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로 하고,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피해장애인이 거주하는 시· 군·구의 장애인 업무 담당 공무원.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와 특별자치시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업무 담당 공무원이 위원이 된다.
- 2.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u>장</u>
-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중 피해장애인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장
- ④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 의 의장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 한 장애인학대사건을 관할하는

<신 설>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 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피해장애인통합지 원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21(피해장애인통합지원 협의회 위원의 제척) ① 피해 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의 위원 은 자신이 속한 장애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장애인학 대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장 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에 대한 제59조의20제2항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척된 위원 (이하 "제척위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척위원이 속한 피 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의 위 원 중 제척위원이 속한 장애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접지역의 장애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대신하여 제59조의20제2 항의 심의·의결에 참석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대신할 위원 <신 설>

이 없는 경우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에 속한 위원 중 제척위원이 속한 장애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이 대신하여 참석한다.

제59조의22(장애인학대예방의 날)
① 범국민적으로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장애인학대예방의 날부터 1 주일을 장애인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 애인학대예방의 날과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